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7
----------	------

발의연월일 : 2016. 9. 23.

발의자 : 이장우 · 윤종필 · 박덕흠

전희경 · 조경태 · 김한표

김성태 · 김성찬 · 강석호

조원진 · 윤영석 · 이우현

박순자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국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 및 신고업무를 대상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나.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련 업무(폐업 및 직권말소)를 기초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이양함(안 제15조 및 제17조).
- 다. 등록·신고 등 업무처리 시 가족관계등록 관련 전산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에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함(안 제30조의2 신설).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 절차규정 을 삭제함(안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지사에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등록·신고관청은 제15조에 따른 등록, 제16조에 따른 신고,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시·도지사(이하 “과태료부과권자”라 한다)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 · 시행) ① ~ ③ (생 략)</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u>광역시장</u>,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 ·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 -----.</p> <p>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 -----.</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 ----- -----.</p>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① 잡지를 발행하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
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② · ③ (생략)

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잡지를 등록한 때에는 지체 없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6조(신고) ①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② 잡지외간행물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

⑤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_____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신 설>

-----. <후단
삭제>

제30조의2(가족관계등록정보 공
동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
는 등록·신고관청은 제15조에
따른 등록, 제16조에 따른 신
고,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승
계,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
행물 지사 등의 설치 등록 등
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
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과태료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과태료부과권
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3조(과태료 등)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p>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p>	<p><삭 제></p>
<p>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 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부 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삭 제></p>
<p>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 다.</p>	<p><삭 제></p>